영우 트리지움 2차 주상복합 아파트 일반(기관)특별공급 안내문

■ **아파트명** : 학성동 영우 트리지움 2차 주상복합 아파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70-19번지 외 9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9층 1개동 총 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공사** : (주)영우종합건설 **위탁사** : (주)영우개발 **시행사** : ㈜무궁화신탁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총 일반분양 32세대, 특별공급 17세대 中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면적(㎡)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84.9574	84	84.9574	26.6735	111.6308	111.6308
계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 세대수

구분	84A	합계
장애인(울산광역시)	1(5)	1(5)
국가유공자	1(5)	1(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5)	1(5)
합계	**3(15)**	**3(15)**

가.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입니다.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합니다.

■ 주택공급 일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3.10.27.(금) 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2023.11.06.(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방문청약	2022.11.06.(월) 10:00~14: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11.14.(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정당계약 기간	2023.11.27.(월) ~ 2023.11.29.(수)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가.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과 동시 운영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p.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全 은행)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자격 요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 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하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소유 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3.10.27.(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7.(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